

우리나라 工所權制度

1908年 誕生에서 1985年 오늘까지...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는 언제 어떻게 誕生되었는가? 또 그 骨子は 무엇이며 어떻게 發達하여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같은 質問에 선뜻 對答할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 工業所有權制度 關係業務를 本業으로 하여 現行 國內外 工業所有權制度에 通達하다시피 한 사람도 이같은 質問 앞에는 망서린다.

이같은 傾向은 工業所有權制度 關係 分

野의 事情만은 아니다. 他分野에도 흔할 수 있고 또 있는 일이다.

그러나 工業所有權制度 關係 分野만은 例外이었으면 하는게 本會 및 本誌 編輯室의 바램이다.

誕生과 함께 40여년을 日本人에게 짓밟인 슬픈 歷史를 되풀이 하지 않고 國際化 趨勢에 副應하여 現行 制度중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고 未備事項을 補完하므로서 工

最初의 工業所有權制度 誕生

우리나라에 工業所有權制度가 처음 誕生된 것은 1908年(隆熙—純宗 2年). 同年 8月 12日에 公布되어 8月 16日부터 施行된 韓國特許令(勅令 第196~200號)이 우리나라 最初의 工業所有權制度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도 그 나이가 어느덧 77세가 되는 셈이다.

돌이켜보면 韓半島에 世界列強이 角逐하던 한 時代가 日·露戰爭과 日·清戰爭을 교비로 日本의 獨舞臺가 되고 마침내 1905年 11月에는 乙巳 保護條約이 締結되었다.

또 1906年 6月에는 統監府가 設置되고 各機關의 要素와 要職에는 日本人이 配置되어 우리나라

의 政治와 行政을 管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政府는 이름뿐이고 實質的인 權限은 日本에 있었다.

1907年 7月에는 이른바 丁未條約이 締結되었다. 이로서 統監府의 權限이 더욱 強化되고 相對的으로 우리나라 政府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1908年 10月16日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發明·意匠·商標 및 著作權에 관한 美·日條約이 이뤄지고 또 2年 뒤인 1910年 8月에는 드디어 痛恨의 韓·日合邦이 이루어지고 말았으니 그틈바구니에서 1908年 8月에 처음으로 實施된 韓國特許令은 비록 純宗의 勅令으로 內閣總理大臣 李完用에 의해 告示(公布) 하였으나 그 實相은 美國과 日本人의 權利保護를 主眼으로 하여 日

77年史

制度改正中心

業所有權制度的 現代化를 期하기 위해서도 이것만은 熟知해 두어야겠다.

특히 工業所有權制度를 처음 對하는 사람은 溫故知新的 精神으로 익혀야겠다.

이에 本誌는 우리나라 工業所有權制度的 1908年 誕生에서 1985年 오늘에 이르기까지 時代的 背景 및 制度改正을 中心으로 追跡, 調査分析해 보았다.

〈編輯者 註〉

本의 特許制度를 韓國에 그대로 實施한 것에 不 過했다.

그런데 1908年(隆熙 2年) 8月 12日에 公布하 고 同年 8月 16日부터 施行한 工業所有權制度를 살펴보면 ▲韓國特許令(勅令 第196號)과 同施行 規則(統監府 第25號), ▲韓國意匠令(勅令 第197 號)과 同施行規則(統監府令 第26號), ▲韓國商 標令(勅令 第198條)과 同施行規則(統監府令 第 27號), ▲韓國商號令(勅令 第199號)과 同施行規 則(統監府令 第29號), ▲韓國著作權令(勅令 第 200號)과 同施行規則(統監府令 第28號) 등으로 構成되어 있다.

한편 實用新案令은 1年뒤인 1909年(隆熙 3年) 11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또 韓國特許令의 內容을 要約하면 ① 韓國의

特許·實用新案·意匠·商標·商號·著作權에 관하여는 日本의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商號法·著作權法을 適用하고 ② 韓·日 兩國民은 同一한 保護를 받으며 또한 韓國에서 治外法權을 行使하지 아니한 나라의 國民에게도 이를 適用하며 ③ 日本·韓國 및 美國의 國民이 韓國에서 얻은 權利는 물론이고 本令 施行前에 日本이나 美國에서 얻은 權利도 이를 保護한다는 要旨로 되어 있다.

統監府 特許局的 設置

統監府 特許局은 1908年 8月 勅令 第202號에 의하여 韓國에 있어서의 發明·實用新案·意匠·商標 및 著作權에 관한 業務를 管掌토록 하고 局長이하 事務官·審査官·技師等 19名을 두고 審査와 審判業務를 處理했다.

그러나 統監府告示 第123號와 第126號는 統監府 特許局은 이를 京城(現 서울) 統監府構內에 두되 그 出張所를 日本 東京市 麴町區 道三町 所在 日本 特許局 內에 두어 京城 統監府 特許局에서 特許·意匠·商標 및 著作權에 對한 請願·請求申告의 書類와 見本등의 接受와 處理를 하게 했다.

非運의 韓·日合邦

韓·日合邦 2年前인 1908年(隆熙 2年)부터 工業所有權制度를 처음 實施한 것도 事實이고 名目上 韓國의 勅令으로 統監府에 特許局을 두기는 했으나 事實은 그때부터 日本法을 그대로 適用하면서 韓國政府의 勅令形式을 갖추었을 뿐이다. 또 京城의 統監府에 特許局을 두었으나 東京의 日本特許局에 둔 出張所에 業務處理를 하도록 하는 粉飾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08年에 實施한 韓國特許令이 舊韓末에 開花의 인 政策을 自主的으로 採擇하여 施行한 것처럼 보이나 그 當時 史料에 의하면 처음부터 美·日 條約의 實施에 따라 부득이 韓國政府의 이름을 빌려서 日本制度를 實施하고 韓國에서도 美國·日本·韓國人의 權利를 均等하게 保護하는 形式의 工業所有權制度를 實施하게 되었던 것이다.

2年만에 廢止된 非運의 制度

우리나라의 工業所有權制度는 誕生 2年만에 廢止되는 非運에 처하게 되었다.

日本은 韓·日合邦과 동시(1910年 8月 29日)에 統監府 特許局을 勅令 第321號에 의해 廢止하고, 日本 勅令 第336號로 2年前에 公布하여 實施해 오던 韓國特許令·實用新案令·意匠令·商標令·著作權令 등을 第337號에 의하여 消滅해 버렸다.

또 日本勅令 第335號로 日本의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著作權法 등을 韓國에도 그대로 適用하였고 이와함께 勅令 第339號에 의하여 日本辨理士法을 우리나라에 施行케 하는 特許辨理士令도 施行했다.

이렇게 되어 1910年 8月 29日 勅令 第335號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日本法을 그대로 適用한 이措置는 世界 第2次大戰이 끝나고 美軍政法令에 의하여 우리 政府가 移管받게 된 1946年 1月 22日까지 効力을 갖게 되었다. 실로 36年을 지배한 것이다.

8·15解放과 美軍政法令 第44號

8·15解放후 過渡期의 工業所有權制度 機構의 創設과 運營을 위하여 美軍政廳은 1946年 1月 22日 美軍政法令 第44號를 公布했다.

美軍政廳은 이 法令을 통해 朝鮮政府 鑛工局(지금의 商工部)에 特許院을 設立(第1項)하고 專賣特許·實用新案·商標·意匠·版權에 관한 法律을 施行하며 特許代理人에 관하여 法律이 適用되는 部分을 施行하도록 했다. 또 上記 特許法施行 및 特許代理人에 관한 法律施行 등에 관한 모든 業務와 財産 등을 移管받아 保管하는 한편 日本發明人協會 朝鮮本部의 모든 記錄과 冊을 移轉(第2項)토록 했다. 그런데 美軍政廳은 1946年 1月 22日부터 發効토록 했다.

特許院의 誕生

解放후 最初로 設立된 特許行政機關이 「特許課」였는가 「特許院」이였는가는 두가지 說이 있다.

즉 韓國法制研究會 編의 「美軍政法令總覽」에는 「特許課」로 되어 있으나 韓國行政出版社와 法院行政處編의 美軍政法令集에는 「特許院」으로 되어 있다.

또 美軍政廳이 作成한 法令 原文에도 「PATENT OFFICE」로 표기되어 있고, 當時 特許業務에 관여한 사람들의 證言을 종합해봐도 「特許院」이였음에는 疑의의 여지가 없다.

特許院의 設立에 대해 1959年 10月 1日 特許局(지금의 特許廳이 發刊한 特許年報(1946年~1958年 合版)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軍政 初期인 1946年 1月 4日 特許行政創設委員會를 設置하고 그 準備業務에 着手하여 同年 1月 22日자로 發布한 美軍政法令 第44號로서 特許·實用新案·美匠·商標 및 著作權에 관한 法律과 辨理士에 관한 法律을 實施하고 이에 대한 記錄·帳簿·模型·圖面·說明書 其他 書類物品의 保管維持와 日本發明協會의 모든 記錄과 財産을 移管하기 위하여 特許院이 創設되자 創設行政의 諸準備事務를 위한 職員이 36名이 배치되었다. 이렇게 特許院이 創設되었으나 諸般特許法規가 制定되지 않아 于先暫定的 措置로서 保護制度를 採擇하여 特許法이 制定實施될때까지 新規의 發明考案은 이 制度에 의하여 保護를 받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歷史的인 眼目으로 보면 1908年에 日本人의 손에 의하여 日本制度를 이 땅에 옮겨 施行한 이후 1910年 合邦에 의하여 日本法을 通用하여 오던 第1期의 工業所有權時代가 끝나고 부터는 1945年의 日本의 敗北와 美軍의 占領으로 立場이 바뀌어 美軍政下에서의 臨時措置인 軍政法令 第44號가 發하여 졌고 이어서 그 다음해인 1946年 10月 5日에 美軍政下에서 소위 「1946特許法」이 美軍政令 第91號로 制定되어 朝鮮軍政長官 이름으로 公布·實

施되었다.

그리하여 1961年 12月 31日 大韓民國의 主權에 의한 特許法등이 制定될때까지 15年間の 第2期의 外國體制下의 工業所有權時代가 되었다.

美軍政法令 第44條에 의하여 朝鮮政府로 하여금 工業所有權과 版權關係·特許代理人 및 日本發明人協會 朝鮮本部등의 모든 記錄·帳簿·圖型·說明書·其他 書類 物品을 移管하여 保管케 하고 同時에 곧 이어서 1946年 10月5日字로 12章 265條로 構成된 特許法을 制定·公布하여 10月 15日부터 發効케 했다.

이 法의 特徵은 版權은 1908年의 工業所有權과 같이 特許局에서 取扱하였으나 1910年에 이를 분리하여 內務省에 移管시켰는데 1946年 1月 22日 美軍政法令 第44號에서 다시 工業所有權과 같이 特許院에 移管시켰다가 이 法에서는 이를 除外시켰다.

特許·實用新案·意匠 등을 한 法律에 規定하였음은 물론 特許局의 設置와 職制에 관한 事項까지를 同時에 規定하였음은 이 法도 급한 나머지 臨時措置의인 性格이 었보인다.

그러나 이 法은 1961年末까지 15年間 비교적 장수한 法律이었다. 우리나라 歷史의 轉換點에서 過渡的이기는 했으나 特許制度의 命脈을 이여준 法이었다는 點에 큰 뜻을 찾을 수가 있다.

大韓民國 特許法의 誕生

1961年 5月 16日 軍事革命 政府가 樹立되고 그다음해인 1962年 대대적인 舊法令의 整理作業이 있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法令중에는 日政時代의 法令·美軍政法令·自由黨政府 當時의 法令·民主黨政府때의 制定法令등이 混成되어 있었으며 形式上 有効한 것일지라도 實質的으로 死文化된 것과 現實에 맞지 않은 것과 이미 땅각상태에 있는 것 등 이른바 舊時代의 殘滓가 많이 남아 있었다.

따라서 國家再建最高會議가 立法機能을 맡으면서 이들은 清算하여야 할 것은 清算하고 現實에 맞지 않은 것은 고치고, 必要한 것은 새로

制定하는등 法令 整理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商標法은 政府樹立 이후 1949年 11月 28日 法律 第71號로 制定하였으나 그 당시의 명칭으로 發明特許·實用特許·美匠特許 및 特許局의 設置와 職制등은 1946年 制定된 軍政法令인 特許法에 한꺼번에 規定되어 있었다.

이것을 法令整理事業의 一環으로써 特許局 職制(1962年 10月 2日制定)·特許法(1961年 12月 31日 法律 第950號)·實用新案法(1961年 12月 31日 法律 第952號)·意匠法(1961年 12月 31日 法律 第951號) 등으로 분리하여 각각 獨立法으로 합과 同時에 이들 法의 施行令등 부수 規定도 새로이 制定하였다.

또 辨理士法도 1961年 12月 28日 法律 第864號로 새로 制定하여 일단 工業所有權制度 施行을 위한 法令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1908年 이래 工業所有權制度가 實施되었으나 1945年 8月 15日 解放이 되기까지는 日本의 勅令에 의하여 日本法을 適用하였고 1946년부터는 美軍政法令 形式으로 이때까지 實施되어 왔다.

따라서 實質的인 우리 主權에 의한 工業所有權制度는 1961年이 그 歷史의 紀元이라 할 수 있다.

優先權主張에 관한 規定등 新設

政府는 우리 主權에 의한 工業所有權制度 誕生 이후 1963年 3月 5日 法律 第1293號로 1961年末에 新規制定되어 1年餘를 施行한 經驗에 비추어 補完의 必要性을 條項을 改正하였다.

과리協約과 PCT加入등 國際化措置에 對備하여 他國과의 均衡적인 制度를 위하여 特許法과 實用新案法에 優先權 主張에 관한 規定을 新設했다.

政府는 이 法律에서 特許의 대상인 發明도 産業에 利用할 수 있는 것에 限하되 그 制限을 없애고 發明의 定義(第5條)을 新設했다.

즉 이 法에서 發明이라 함은 「自然法則을 利用한 高度의 技術의 創作으로서 産業에 利用할

◎ 特輯調查分析 ◎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定義하고 ②項에는 從前의 第5條(新規性의 定義)를 그대로 存置했다.

또 先出願者에 관한 規定을 補完하고(第10條 第2項 내지 5項을 新設) 出願變更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는(第12條 2) 한편 實用新案 出願人은 그것을 特許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관련되는 事項도 새로 規定했다.

政府는 또 審判·審査書類·登錄願簿의 搬出 禁止條項(第34條의 2)과 優先權의 主張에 관한 規定(第36條의 2) 그리고 特許權의 濫用禁止와 濫用の 類型을 規定(第45條의 2)했다.

工業所有權制度 大幅改正

政府는 1973年 2月 8日 法律 第2505號로 1961年 制定되어 施行되는 동안 現實에 맞지 않은 工業所有權制度를 大幅 改正했다.

政府는 이 改正을 통해 特許出願에 대한 審査와 審判機能의 엄정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權利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企業의 自由로운 活動을 저해하는 特許制度의 부작용을 제거하고 反面 새롭고 유용한 發明考案에 대하여는 이를 強力히 保護하고자 特許法 이하 實用新案法·意匠法·商標法 등을 大幅 改正했다.

그런데 이 改正에는 日本과의 工業所有權保護 協定の 締結을 앞두고 國內法의 體制와 條文의 整理作業의 意味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政府는 이 改正을 통해 物質의 用途發明에 대하여는 先進技術의 단순한 情報入手만으로 內國人이 容易하게 利用開發할 수 있고 원자핵분열 및 변환방법에 의하여 製造된 物質은 막대한 特許料를 지불하지 않고는 使用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特許대상에서 제외하고(第4條), 교통통신이 고도로 發達한 現實을 감안함과 아울러 先進國에서의 낡은 技術이 위장출원되어 登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出願前에 外國刊行物에 게재된 것도 新規性이 없는 것으로 判斷하는 이른바 準國際主義를 채택하였으며(第5條의 2),

輸出品에 대하여는 特許權 침해 분쟁 중에 있을지라도 對外信用을 고려하여 우선 輸出을 이행토록 하고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결하기 위하여 通關단계의 수출하물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第40條).

또 特許權者의 獨占에 의하여 國際市場의 需要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第3者에게 강제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對外信用維持와 외화획득의 增大를 기하도록 했으며(第45條), 特許發明의 적극적인 活用과 産業化를 위하여 사업실시와 실시보고를 의무화하고 3年이상 實施하지 아니하는 特許權은 취소 또는 강제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第45條), 公務員의 職務發明에 대한 보상과 관리의 근거 규정을 두었다(第15條).

政府는 또 審査審判官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資查要件과 일정기간의 研修를 받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으며(第72條·第93條), 特許權의 濫用과 特許侵害訴訟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용한 權利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第45條의 2), 불실권리의 정리를 위하여 무효 심판청구제한기간(現 5年 이내)을 原則적으로 폐지하였다(第90條). 그런데 이 法은 1974年 1月 1日부터 施行되었다.

韓·日工業所有權協定에 앞선 一部 改正

1973年 12月 31日 政府는 法律 第2658號로 工業所有權制度의 一部를 改正했다. 1973年 12月 31日은 韓·日工權所有權協定の 施行을 하루 앞둔 날이었으며 마지막 國內法의 손질이였기에 改正內容이나 幅보다는 그 時期的인 意義 또한 크다.

政府는 이 改正을 통해 特許出願에 對한 優先權主張에 關하여 從前에는 條約·協定 또는 法律에 의하여 우리 국민에게 優先權을 認定하는 國家의 國民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中 法律을 削除하여 條約 또는 協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認定하는 國家의 國民간이 優先權 主

張을 할 수 있도록 하고(第42條), 特許의 無効事由를 追加로 新設하였다(第69條 第1項중 第5號 및 第6號를 新設).

또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 파리協約 同盟國 國民에 대한 內國民待遇(第42條) 및 同盟國 國民間의 優先權主張 근거확충(第42條)등 파리協約의 同盟國 共通規定事項을 法制化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80年 5月 4日 파리協約에 加入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앞서 1979年 3月 1日 WIPO(世界知的所有權機構)에도 加入한 바 있다.

또 權利保護의 限界를 명확히하고 先進國制度와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特許請求範圍記載에 있어서 多項制를 채택(第8條)하고, 發明의 內容을 조기 공개하여 企業間(出願者間)의 重複研究와 不必要한 二重投資를 防止하기 위하여 出願의 早期公開制度를 導入(第80條의 2) 하였으며 審査處理의 促進을 위하여 審査請求된 出願에 대해서만 審査를 하는 審査請求制의 채택(第80條의 2 및 第80條의 3)·優先權審査制度新設(第80條의 4)·特許出願 明細書등의 記載事項에 관한 規定을 施行令으로부터 本法으로(第8條) 옮기고 出願의 補正(第10條의 2)과 明細書등의 補正과 要旨變更(第10條의 3)의 新設·出願의 拒絕理由의 明文化(第82條 1項)·特許無効事由의 整備(第69條)등을 骨子로 改正했다.

PCT加入을 위한 國內法改正

1982年 11月 29日 特許廳은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趨勢에 따라 特許協力條約(PCT)에 加入함으로써 特許出願節次의 國際的인 協力과 技術情報의 擴散을 통한 國內技術開發을 促進하기 위하여 PCT加入이 必要했으며 이를 위해 國內 조치로서 特許法등을 改正했다.

特許廳은 이 改正을 통해 우리나라 特許廳을 통하여 國際出願을 하는 경우 國際出願을 할 수 있는 者를 우리나라 國民과 우리나라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있는 外國人으로 하고(第157條 2),

出願인이 出願書에 提出하여야 할 書類를 規定하고 그 出願書類에 使用할 言語는 商工部令으로 定하도록 했으며(第157條의 3), 國際出願日은 原則적으로 出願書를 提出한 날로하되 提出書類가 要件을 不備한 경우에는 그 不備事項을 補正한 날을 國際出願日로 認定하도록 했다(第157의 4).

또 出願書類가 補正期間內에 補正되지 아니하거나 所定의 手數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出願은 取下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第157條의 6).

그리고 反對로 外國人이 우리나라에서 特許를 받기 위해서 自國에 出願하는 경우에는 外國人이 自國에 出願한 날을 우리나라에 出願한 날로 認定하고(第157條의 9), 出願인이 優先權을 主張하는 경우에 그 입증서류 提出期間은 國內出願에 있어서는 出願日로부터 1年 3月이나, 國際出願에 있어서는 特許協力條約에 의하여 1年 9月로 하며(第157條의 10), 國際出願書는 外國語로 作成되므로 出願人은 出願후 1年 8月이내에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第157條의 11).

또 國內出願의 公開時期는 出願日로부터 1年 6月이나 國際出願의 國內公開時期는 출원서 번역문의 提出時間에 맞추어 1年 8月로 하며(第157條의 14), 出願變更 및 審査請求등은 出願書의 번역문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第157條의 16, 17).

드디어 PCT 加入

工業所有權 분야에서의 우리나라의 國際的 지위가 최근 수년이래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工業所有權 國際化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해 줄 우리나라의 PCT 加入이 실현됐다.

우리나라의 PCT 加入案은 84年 4月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재가를 거친 다음 스위스 제네바市 소재 WIPO 사무국에 기탁되었는데 PCT 加入案은 기탁서 접수후 3개월만에 자동발효되므로 우리나라의 PCT 加入은 84年 8月 10日에 실

현되었다.

우리나라는上記한 바와같이 PCT 加入을 위해 特許·實用新案法 改正등 각종 國內法 改正作業을 進行해왔다.

즉 1982年 11月 特許法 및 實用新案法을 改正公布하고, 83年 11月에는 特許法施行令을 改正公布했으며, 83年 12月에는 特許法施行細則과 實用新案法施行細則 및 特許法등에 의한 特許料와 登錄料 그리고 手數料의 징수규칙을 改正公布했다.

그리고 84年 4月 PCT 加入案이 국무회의의 통과와 대통령재가에 이어 國際條約業務官署인 外務部에 의해 WIPO 事務國에 기탁되었다.

그런데 PCT는 WIPO를 구성하는 2개條約중 하나인 파리協約 산하 14개條約중 하나로서 파리協約에는 PCT 이외에도 商標의 國際登錄條約인 니스협정·헤이그협정·로카르노협정·스트라스부르협정·리스본협정·부다페스트조약·TRT(상표등록조약)등 13개條約이 있다. 그런데 特許廳은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에 발맞추어 지난해 PCT에 加入한데 이어 올해 商標의 國際登錄에 관한條約인 마드리드협정등 6개條約에 加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美國의회가 知的所有權이 보호되지 않는 나라에 대한 GSP(一般特惠關稅制度)受惠를 연계시킬 수 있는 通商關稅法을 통과시킨 점을 감안, 물질특허도입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상표 및 特許盜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의 改正計劃

特許廳은 工業所有權의 國際化趨勢에 副應하

여 現行法令중 不合理한 點을 改善하고 未備事項을 補完하므로써 特許制度의 現代化를 期하기 위해 先進國에서 採擇하고 있는 制度중 우리 實情에 맞는 制度를 導入하여 技術開發을 促進할 計劃이다.

特許廳은 이번 改正을 통해 權利調整裝置로서 重要性이 強調되는 利用抵觸에 관한 特許發明의 實施許諾制度는 그 判斷對象이 技術的인 事項보다는 오늘의 經濟與件에서는 對價의 決定이 重要함에 비추어 通常實施權許與의 審判制度를 廢止하고 迅速 合理的인 節次가 保障되는 裁定制度를 採擇(案 第59條)하고, 特許査定된 發明의 早速한 權利化를 圖謀하기 爲하여 特許權設定의 登錄의 納付期間을 從來 3個月에서 30日로 短縮하였으며 追納期間을 廢止하고 30日에 限하여 延長할 수 있도록(案 76條의 2) 하며 無效審判이나 權利範圍確認審判에서 利害關係有無의 審理로 因한 不必要한 努力을 除去하기 爲하여 請求人適格에 관한 規定을 削除(案 97條 第3項)할 計劃이다.

特許廳은 또 審判處理을 促進하고 發明의 迅速한 權利化를 期하기 爲하여 拒絶不服抗告審判을 請求하면서 明細書등을 補正할 境遇에는 擔當審査官으로 하여금 審査토록(案 126條의 2 내지 126條의 4)하고, 特許制度의 效果的인 運營을 期하기 爲하여 現行法令中 不合理하고 未備된 事項을 改善(案 第31條, 第45條 第3項, 第115條, 第149條등)하며, 工業所有權의 國際的統一化趨勢에 副應하기 爲하여 파리協約 履行에 阻害가 되는 現行規定을 改正하고 特許協力條約의 改正事項을 規定(案 第42條, 案 第157條의 22)할 計劃인데 制度改善에 따라 關聯條項을 整備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W>

발 명 진 흥 기 술 혁 신 이 룝 되 는 선 진 국 가